

고용보험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대안의 검토*

Policy Options for Minimizing the Dead Zone of the Korean Employment Insurance System

유길상**

Kil-Sang Yoo

요약

본 논문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실태를 분석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여러 정책 대안을 비교분석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가입 활성화 방안, 적용 제외 근로자의 적용 확대 방안, 실업급여의 관대화 방안, 비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 방안, 실업부조 및 실업보험저축계좌제 도입 방안, 맞춤형 패키지 사업을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였다. 전문가에 의한 설문조사와 객관적 평가 기준에 의한 평가 결과 각각의 대안은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지만 고용과 복지가 연계된 맞춤형 패키지 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1차적으로는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하여 가입률을 높이고, 법령상의 적용 제외 근로자를 최소화하면서, 고용보험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비임금근로자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구직자 등에 대해서는 심층상담, 직업훈련, 집중적인 취업알선 등 맞춤형 패키지 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Key Words : Employment Insurance, Unemployment Benefit, Individualizing Package Services

ABSTRACT

This paper reviews the uncovered people of the Korean Employment Insurance System (EIS) and analyzes policy options for minimizing the dead zone of the EIS. There are several policy options such as subsidizing insurance premium to employers and employees of small companies, extending coverage of excluded groups, relaxing qualifications of unemployment benefits and increasing benefit period and level, introducing the unemployment assistance system, introducing the unemployment insurance savings account system, extending coverage to non-wage workers and individualizing package services. According to the survey to the specialists and comparative evaluation criteria, the best policy option to minimize the dead zone of the EIS was to activate individualizing package services of intensive consultation, job place services, tailored vocational training, income support, daycare services, etc. to cure complex employment barriers of job seekers.

* 이 논문은 2012년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교육연구진흥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다.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 교수 (ksyoo@koreatech.ac.kr)

제1저자 (First Author) : 유길상

교신저자 : 유길상

접수일자 : 2012년 10월 23일

수정일자 : 2012년 11월 29일

확정일자 : 2012년 12월 7일

1. 서론

고용보험제도(Employment Insurance System: EIS)는 기본적으로 임금근로자를 실업으로부터 보호하고 실업을 예방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적용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는 1998년 10월 1일부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고 있어 적어도 법령상으로는 보호의 실익이 있는 취업자의 대부분이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특히 2004년 1월 1일부터는 일용근로자도 실업급여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2012년 1월 22일부터는 자영업자도 임의 가입이 가능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자 중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의 비중은 40% 내외로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가 광범하다는 문제가 있지만 그 해법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본 논문은 이미 고용보험제도가 법령상으로는 거의 모든 사업과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의 요구가 나오고 있는 이유를 살펴보고,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여러 정책 대안을 비교 분석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연구방법과 절차

본 연구의 연구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실태와 쟁점을 살펴본 후 이러한 쟁점에 대하여 노·사·정, 국회, 학계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소개하였다.

이러한 대안에 대하여 고용보험 전문가를 대상으로 사각지대 해소 방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와 고용보험 적용 대상과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객관적인 비교 기준에 입각하여 각 대안을 비교 검토하여 바람직한 대안을 도출하였다.

III.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실태와 쟁점

1. 고용보험 사각지대 실태

2012년 3월 현재 고용보험 당연 적용 대상자는 1,464만 명으로서 임금근로자의 약 84.0%이고, 이 중에서 실제 가입자는 대상자의 72.3%인 1,058만 명이다(표 1 참조).

[표 1] 고용보험 사각지대 추정(2012년 3월 기준)

Fig. 1. Estimated Dead Zone of Korean EIS

15세 이상 총인구 4,141만명(100%)						
경제활동인구 2,521만명(60.9%)						
취업자 2,427만명(58.6%)						
임금근로자 1,742만명(42.1%)						
비경제활동인구 1,621만명(39.1%)	실업자 95만명(2.3%)	비임금근로자 684만명(16.5%)	적용 제외 278만명[16.0%]	적용 대상 1,464만명[84.0%]	실제 가입자 1,058만명[72.3%]	미가입자 406만명[27.7%]
		공식적으로 제외		적용의 사각지대	고용보험 수혜 대상	고용보험 수혜자

자료: [1]

2.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쟁점 대상자 검토

가. 당연 적용 대상자 중 미가입자

당연 적용 대상자의 27.7%(406만 명)는 노사 모두 고용보험료 부담, 비공식 취업 사실의 행정 당국 인지 등을 우려하여 가입을 기피하고 있는데, 이들을 어떻게 고용보험의 틀 속에 공식적으로 보호하여 투명하게 관리할 것인가가 첫 번째 쟁점이다. 이들은 영세사업장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단기계약직근로자 등으로서 이들의 실업 위험이 고용보험 가입자의 3배로서[2] 사회적 보호를 더 많이 필요로 하는 계층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 문제다.

나. 적용 제외 근로자

고용보험은 임금근로자 중에서도 산업, 직업, 연령 등 사업장 및 근로자의 특성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들은 약 278만 명으로서 취업자의 16.0%인데(표 1 참조), 이들 중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가 두 번째 쟁점이다.

첫째, 적용 제외 사업장의 근로자는 농업·임업·어업 및 수렵업 중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가사서비스업,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 건설공사 등은 행정적으로 관리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이유로 당연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둘째, 임금근로자 중 65세 이상인 자는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연령 계층이고, 이들은 공적연금에 의해 보호를 받는 계층이라는 이유로 실업급여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들은 고용안정·직업능

력개발사업의 적용 대상에는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업급여 적용 여부가 문제가 된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2012.8.7.에 65세 이상인 근로자의 실업급여 지급을 허용하는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하여 국회 심의만을 앞두고 있어 쟁점이 되고 있지는 않다.

셋째,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고용 및 임금에 관한 기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넷째,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관계 법령에 의해 정년 때까지 고용이 보장되고 있어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지는 않다.

다. 비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비임금근로자가 684만 명이나 된다(표 1 참조).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비임금근로자에 대해서는 이직 사유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곤란하고, 고용 및 소득 파악 등 행정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려우며, 적용 시 도덕적 해이로 인한 고용보험 재정의 안정을 기하기가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취업자 중 이들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다. 정부도 이들을 고용보험의 보호 속에 포함하기 위해 2012년 1월 22일부터 자영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임의 적용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2012년 12월 현재 2만여 명만 가입한 상태로 그 효과가 미미하여 이들을 어떻게 사회적 보호의 틀 속에 포함할 것인가가 여전히 쟁점이 되고 있다.

라. 실업자 중 실업급여 비수급자

실업자 중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처음부터 갖추지 못한 자발적 실업자 등과 실업급여를 소진할 때까지 취업하지 못한 장기실업자 등을 어떻게 노동시장에 통합할 것인가가 쟁점이 되고 있다.

IV.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각계의 요구

노동계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관계자를, 경영계는 한국경총,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진흥회의 관계자를 초청하여 각 단체의 공식 견해를 취합하여 파악하였고, 국회의 의견은 국회의

원이 18대 국회와 19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률 개정안의 내용을 취합하여 정리하였으며, 학계의 의견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파악하였다. 파악된 내용이 매우 광범하여 여기서는 핵심내용만을 소개하고자 한다.

1. 노동계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동계가 주장하는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을 근로자뿐만 아니라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취업지원 패키지 제도를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둘째,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피보험단위기간을 현재의 180일에서 120일로 완화하고, 소정급여일수를 현재의 90~240일에서 180~360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셋째,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실업부조제도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 경영계

경영계는 구직급여 수급요건 및 소정급여일수의 확대,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실업부조제도의 도입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3. 국회

18대 및 19대 국회에서 여러 국회의원이 제출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매우 많지만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 확대와 관련하여 자영업자, 가사사용인(파출부·가사도우미 등) 등을 적용대상에 포함한다.

둘째,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피보험단위기간을 현재의 180일에서 120일 또는 150일로 완화하고, 소정급여일수를 현재의 90~240일에서 180~360일로 확대한다.

셋째, 자발적 이직자가 실업 후 3개월 또는 6개월이 경과하면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실업부조제도를 도입한다.

4. 학계

학계에서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대해 활발한 논의는 없지만 선진국보다 단기적인 실업부조제도의 도입[2, 3],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의 제한적인 지급[3, 4, 5], 실업보험저축계좌제의 도입[3, 6, 7] 주장 등이 제기된 바 있다.

V.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대안별 비교

1. 선택 가능한 대안의 검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제시되어온 대안은 크게 3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근로자를 적용 대상으로 하는 전통적인 고용보험의 틀 속에서 적용 확대를 추진하는 방안이다. 이는 세부적으로 당연 적용 대상자 중 미가입자의 가입 활성화 방안, 임금근로자 중 비적용자를 적용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 실업급여의 관대화 방안(자발적실업자 실업급여 지급, 실업급여 소진자를 위한 실업급여 지급기간 확대 등) 등으로 세분화된다.

둘째, 근로자를 적용 대상으로 하는 전통적인 고용보험의 틀을 벗어나 비임금근로자에게도 고용보험의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셋째, 전통적인 고용보험의 틀 속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으로서 실업부조제도의 도입, 실업보험저축계좌제의 도입, 구직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패키지사업의 확대 등이 있다.

2. 대안 비교의 기준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명시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고용보험의 적용 범위를 검토함에 있어서 기준으로 삼는 (1)당사자의 요구 내지는 동의 가능성, (2)노사의 보험료 부담의 적정성과 부담 능력, (3)정부의 재정 부담에 주는 영향, (4)행정적 집행의 용이성, (5)사각지대 해소 효과, (6)제도가 실업의 증가 등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의 정도 등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8].

또한 본 연구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보험평가센터가 2012년 10월에 고용보험 평가 연구의 일환으로 고용보험 전문가 105명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에 대한 의견을 설문조사하였는데, 그 결과를 활용하였다.

3. 대안의 선택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에 대한 위의 6가지 기준에 대해 평가한 결과가 [표 2]에 요약되어 있다. 또한 고용보험 전문가 105명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가 [표 3]에 소개되어 있다.

[표 2] 대안 평가 기준

Fig. 2. Criteria of Option Selection

대안	비교 기준					
	(1)	(2)	(3)	(4)	(5)	(6)
미가입자의 사회보험료 지원	높음	없음	있음	용이	낮음	보통
적용 제외 근로자의 적용 확대	보통	보통	없음	곤란	보통	보통
비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 확대	낮음	높음	없음	곤란	낮음	보통
실업급여 관대화	보통	높음	없음	용이	높음	많음
실업부조제도 도입	높음	없음	높음	보통	높음	많음
실업보험저축계좌제 도입	보통	높음	없음	용이	낮음	없음
맞춤형 패키지사업 확대	높음	없음	보통	보통	보통	없음

주: (1)당사자의 동의 가능성, (2)노사의 보험료 부담 정도, (3)재정부담 정도, (4)행정적 집행 용이성, (5)사각지대 해소 효과, (6)제도의 부작용

[표 3] 사각지대 해소방안 전문가 실태조사 결과

Fig. 3. Survey Result on Policy Options

(단위: 명, %)

구분	인원	비율
전체	105	100.0
고용보험 적용 범위 확대	19	18.1
자발적실업자 실업급여 지급	1	1.0
실업급여 지급기간 확대	3	2.9
실업부조제도 도입	19	18.1
실업보험저축계좌제 도입	11	10.5
구직자 맞춤형 패키지사업 도입	47	44.8
기타	5	4.8

자료: [9]

앞의 대안 비교의 기준과 [표 2] 및 [표 3]의 결과에 따라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별로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보험 당연 적용 대상자 중 미가입자의 가입 활성화를 위하여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1/2~1/3)를 지원하는 방안은 현재 그 효과는 크지 않다[3].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험료 지원액을 높여야 하는데, 이 경우 성실하게 납부한 근로자에게 보험료 납부를 기피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당연 적용 제외 근로자의 적용 확대 방안과 관련해서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등 관계 법령에 의해 고용안정이 보장된 직업에

중사하고 있는 근로자를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포함하는 경우 이들의 실익이 거의 없어 반발이 강할 가능성이 많아 논외로 한다면,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행정적 어려움을 제외하면 적용 확대의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농업·임업·어업 및 수렵업 중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가사서비스업, 소규모 건설공사 등은 행정적인 인프라의 구축과 투명성이 향상되는 대로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유연근무제 확산, 단시간근로자 증가 등으로 다수 사업장에 고용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적용과 복수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단시간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위해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산정 기준을 현재의 ‘일’(日) 단위에서 캐나다 등에서와 같이 ‘근로시간’ 단위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자영업자, 농어민, 특수형태근로자 등 비임금근로자를 고용보험에 적용할 경우 행정적으로 이직 사유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쉽지 않으며,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가 매우 어렵고, 이들은 사업주가 없어 실업급여 고용보험료가 일반근로자보다 월등히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어 당사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통해 해결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비임금근로자를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대부분의 국가에서의 일반적인 현상이다[10].

넷째,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의 지급, 실업급여 수준의 인상,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의 연장 등 실업급여의 관대화 방안은 실업자의 구직노력을 약화시켜 장기 실업을 초래한다는 것은 경제학 이론과 선진국의 경험이 증명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전문가들은 이 방안에 대해서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실업급여 계정의 지출 증가를 초래하므로 재정수지의 균형을 위해서는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대폭 인상하여야 하고, 이 경우 성실한 근로자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방안은 우선순위가 매우 낮다고 판단된다.

다섯째, 실업부조(unemployment assistance) 도입 방안은 국가의 재정 부담에 의해 일정 소득 이하의 모든 실업자를 적용 대상으로 하므로 실업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그러나 실업

부조는 외국의 예에 비추어 볼 때 국가의 재정부담이 매우 크고 장기실업을 유발하는 도덕적 해이 현상 등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서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3].

여섯째, 실업보험저축계좌제(unemployment insurance savings account : UISA) 도입 방안은 UISA는 실업급여 제도가 갖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현상을 예방하여 신속한 재취업을 유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11]. 그러나 UISA는 라틴아메리카에서 실업보험의 대안보다는 퇴직금의 대안으로 도입되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에서는 퇴직금 적립금에 상응하는, 임금의 약 8%를 매월 고용주가 강제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어[12] 고용주의 부담이 매우 높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 실업급여 보험료가 노·사 각 0.55%인 점을 감안하면 비임금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 UISA의 도입은 매우 어려울 수 있다. 특히 현재 사각지대에 있는 비임금근로자 등은 사업주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임금근로자 등이 매월 소득의 상당부분을 UISA에 적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일곱째,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사회보장급여가 연계된 맞춤형 종합 패키지 사업을 도입하는 방안은 전문가 조사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고(표 3 참조), [표 2]의 대안 평가 기준에 의한 평가도 우수하다. 따라서 구직자의 복합적인 취업장애요인을 진단하여 심층상담, 취업알선, 심리치료, 구직기법 교육, 맞춤형 직업훈련, 창업지원, 보육지원,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참여 시 생계비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맞춤형 패키지 사업을 통해 고용보험 및 노동시장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은 최근 선진국에서 복지제도 개혁의 새로운 추세로 자리 잡고 있고[12],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초보적인 형태이긴 하지만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작용도 없으면서 효과도 비교적 큰 맞춤형 종합 패키지 사업을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으로서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VI. 결론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고용보험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위의 여러 대안 중 실업급여의 관대화, 비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 실업부조제도 도입, UISA의 도입 등의 방안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 따라서 1차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용이한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하여 가입률을 높이고, 법령상의 적

용 제외 근로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그러나 고용보험의 틀 속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비임금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제도 이외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최근 선진국의 복지제도 및 노동시장 개혁은 장기 실업을 유발하고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관대한 현금급여 방식을 축소하는 대신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프로그램과 사회보장급여가 연계된 맞춤형 종합 고용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12]. 우리나라도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의 하나로 맞춤형 패키지 사업을 내실화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13].

우리나라도 2009년부터 맞춤형 패키지 사업의 일종인 고용노동부의 ‘취업 성공 패키지 사업’과 보건복지부의 ‘성과 중심 자활사업’(희망리본프로젝트)을 추진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다만 아직 사업 초기 단계로서 자격요건을 경직적으로 정하고 있어 대상자 모집에 애로를 겪고 있고, 서비스 과정도 지나치게 행정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진정한 맞춤형 서비스의 단계로까지 발전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러한 맞춤형 패키지사업을 통합하고 내실화하여 취약 구직자에 대한 맞춤형 고용-훈련-복지 연계 원스톱 종합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나간다면 고용보험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국형 모델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맞춤형 패키지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고용센터에 사례관리적인 고용서비스를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이들이 유연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과 재량권을 높여주는 것이 필수적이다.

참 고 문 헌

[1] 유경준, “고용보험 사각지대 규모 추정” (미발표 자료)(2012)
 [2] 장지연·이병희·은수미·신동균,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방안*, 한국노동연구원(2011).
 [3] 유경준·문형표·황수경·유한욱·최바울·이지혜·권태구·이상돈, *취약계층 고용안전망 강화방안*, 고용노동부(2011.12).
 [4] 김혜원(2007), “장기구직자에 대한 급여 지급방안”, 한국노동연구원, 미발표 자료(2007.2.14).

[5] 허재준·이병희·황덕순·김혜원·장은숙·김명중, *장기실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 및 재취업 촉진 방안*, 노동부(2007).
 [6] 이인재, “고용보험제도의 개혁방향에 대한 시론: 실업보험저축계좌제의 도입을 중심으로,” *고용과 성장*(김승택 외 편), 박영사(2009), pp. 208-232.
 [7] 허재준,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 패키지: 사회보험료 원천징수와 사회보험 저축계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고용과 사회안전망 연구위원회 발표자료(2012.5.17.).
 [8] Blaustein, S. and Isable, C., *An International Review of Unemployment Insurance Schemes*, The W.E. Upjohn Institute for Employment Research(1977).
 [9]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보험평가센터, “고용보험 쟁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2012)
 [10] Yoo. K and Jang, J., *Active Labor Market Policies and Unemployment Insurance in Selected Countries*, Korea Labor Institute and the Friedrich Ebert Stiftung(2002).
 [11] Ferrer and Riddell, “Unemployment Insurance Savings Accounts in Latin America: Overview and Assessment” Discussion Paper No. 5577, the Institute for Study of Labor(IZA) (2011).
 [12] Berkel, Rik van. and Ben Valkenburg (ed.), *Making It Personal : Individualising activation services in the EU*, The Policy Press, Bristol., U.K.(2007).
 [13] 유길상, “이행노동시장의 관점에서 본 고용보험제도 발전방안”, *노동정책연구*, 제12권 제2호, 한국노동연구원(2012.6).

유길상 (Kil-sang Yoo)

정회원



1979년 2월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1988년 8월 : 미국 하와이주립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경제학 박사
 2006년 3월~현재 : 한국기술대학교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 교수

<관심분야> 고용 및 HRD 정책